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16
----------	-------

발의연월일 : 2022. 6. 7.

발 의 자 : 김예지 · 김상훈 · 김태호
정우택 · 박성민 · 강훈식
김승수 · 최혜영 · 전주혜
윤창현 · 이종성 · 이채익
조태용 · 이종배 · 최재형
김선교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을 규정하면서, 그 중 면세가 되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이하 “장애인”이라 함)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에 대하여는 세부면세대상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면세제도는 수입된 물품이 장애인을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것일지라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만 관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이 스포츠에 참여하기 위한 장애인 운동보조기구 등은 기획재정부령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다는 이유로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장애인이 장애인스포츠, 생활스포츠, 전문스포츠 등 스포츠 활

동에 참여하기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수입물품도 관세의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등).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4호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하 이 조에서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시각장애인등이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장애인스포츠, 학교 스포츠 및 프로스포츠 등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u>희귀난치성질환자</u>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 ----- ----- <u>희귀난치성질환자</u> 등(이하 이 조에서 “ <u>시각장애인등</u> ”이라 한다)----- ----- -----
<u><신설></u>	4의2. <u>시각장애인등이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장애인스포츠, 학교스포츠 및 프로스포츠 등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u>
5. (생략)	5. (현행과 같음)